## 정 정 신 고 [보 고]

2016년 2월 18일

- 1. 정정대상 공시서류: 집합투자규약 JP모간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-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: 2009년 4월 16일
- 3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33조(이익분배)	세법개정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	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다음 각</u>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□)보다 적은 <u>경우에 도 이익금의</u>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
부칙(2016.02.)	세법개정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	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등록의 완료 및/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신탁계약시행 이후 최초로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주) 위 정오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집합투자규약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